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가합56355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손성락

피고1. B 주식회사

2. C

3. D

4. 주식회사 E

5. F

변론 종결2020. 4. 24.

판결 선고2020. 5. 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772,553,379원 및 위 금원 중 759,010,959원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위 가.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584,227,352원 및 그 중 570,684,932원에 대하여,

각 2018. 12. 18.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E,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E은

2019. 12. 26.부터, 피고 F은 2019. 12. 1.부터 각 2020. 5.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E,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E,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하 당사자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6. 11. 2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동스크랩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G, 을은 피고 B이다)

제1조 적용 및 효력

본 계약서는 갑이 을로부터 구매하여 H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동스크랩에 적용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 11. 21.부터 2017. 5. 22.까지로 한다.

제5조 납품대금의 지급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1) 납품대금은 금 십오억으로 하며 납품회차별 납품대금은 각 금 오억원으로 한다(부가세 별도). 갑은

각 납품회차별로 각 납품회차별 납품대금 전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 계약보증금

1) 을은 각 납품회차별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선급금 지급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보증금은 제5조에서 정한 납품대금의 10%로 한다.

제12조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보증금의 처리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기일까지 본건 물품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을은 갑이 지급한 선급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본 계약 제7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나. 원고는 2016. 11. 28.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의 G에 대한 위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피보험자 G, 보험가입금액 165,000,000원, 보험기간 2016. 11. 21.부터 2017. 5. 22.까지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는 피고 B이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8.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의 G에 대한 위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반환채무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G, 보험가입금액 550,000,000원, 보험기간 2016. 11. 23.부터 2017. 1. 20.로 하는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D은 피고 B이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라. 위 각 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피고 B은 G과 위 납품계약에 따라 채무불이행시 납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65,000,000원의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G은 피고 B에게 선급금 5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2017. 1. 20. 위 납품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2. 17. G에게 보험금 합계 759,010,959원(= 제1보험계약 188,326,027원 +

제2보험계약 570,684,93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 17.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라 G에게 보험금 합계 759,010,959원(= 제1보험계약 188,326,027원 + 제2보험계약 570,684,932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이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D은 피고 B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 당시 피고 B이 원고가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채권보전비용으로 13,542,420원을 지출한 사실,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 당시 피고 B이 원고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 C는 연대하여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으로 인한 보험금과 채권보전비용 합계 772,553,379원(= 759,010,959원 + 13,542,420원) 및 위 금원 중 759,010,959원에 대하여, 피고 D은 피고 B, C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이 사건 제2보험계약으로 인한 보험금과 채권보전비용 합계 584,227,352원(= 570,684,932원 + 13,542,4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일 다음날인 2018. 12. 18.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인 2019. 12. 5.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피고 B의 형식적 대표이사였고, 실경영주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증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D이 갑 제2호증의 1(보증보험약정서)에 기재된 피고 D 이름 옆의 서명을 직접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 위 보증보험약정서에 따라 피고 D은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D이 실제 연대보증인으로 채무를 보증할 의사 없이 서명하여 비진의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의사를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피고 D의 의사에 따라 연대보증약정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E,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피고 B과 피고 E은 2016. 11. 29. 피고 B이 G로부터 받은 선급금 500,000,000원을 1/2씩 나누어 사용하고, 납품기간 만료일 5일 전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 F은 피고 E의 피고 B에 대한 정산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E은 피고 B에게 선급금 중 1/2에 해당하는 250,000,000원의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E 및 연대보증인 피고 F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 E,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E은 2019. 12. 26.부터, 피고 F은 2019. 12. 1.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인 2020. 5. 2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을 기산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 E, F의 피고 B에 대한 정산금 채무는 변제기가 없는 채무이므로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바, 위 각 피고들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주식회사 E, F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E,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지현

판사이희준

판사정혜원